

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7일 김포시장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10일
다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13일
라. 의결일자 : 2004년 12월 14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립기반 확립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률 명칭이 변경된 사항(모자 복지법 → 모·부자복지법)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가.회관의 기본시설 정의 내용을 “교육실, 회의실, 전시실, 대강당, 상담실, 보육실”로 현 운영체제로 명칭 변경(안 제2조제1호)

나.사용료중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·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(안 제5조제6호,7호)

다.사용료의 반환 내용 중 “ 월회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할 ”을 “ 교육생이 수강 취소를 신청할 ”로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(안 제6조제5호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여성회관은 김포시의 사회교육 시설로 관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자아실현을 위한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의 산실로 자리 매김해 왔음.

○금번 개정 조례안은 회관의 기본시설 정의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및 심리검사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.

○또한 변경된 법률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○제5조의 4항의 감면사유는 모·부자복지법에 의해, 5항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, 제6항의 만65세이상 김포시민은 노인복지법 제10조에 의해 감면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판결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